

정년보장심사위원회 운영 지침

제정 2020. 03. 20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교원인사규정 제18조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일반교원을 심사하기 위한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부총장과 교육연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일반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된다.

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3조 (회의의 소집 및 의결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 (기능) ①위원회는 교원의 정년보장 여부를 심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정년보장임용 기준점수
2. 정년보장임용 심사평정표의 각 평정항목
3. 정년보장에 대한 적격여부 판정
4. 기타 정년보장 임용심사와 관련된 사항

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록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.

②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제6조 (운영세칙) 이 지침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끝.